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52호 2018. 3. 15.(목)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공 고】

제2018-413호	웅진로 일부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1
제2018-416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1
제2018-448호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제2018-453호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31
제2018-480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9
【고 시】		
제2018-43호	소하천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73
제2018-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중로2-62)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81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로 일부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공주시 웅진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3. 15.

공 주 시 장

1. 예 고 명 : 웅진로 일부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2. 관련근거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3(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18년 3월 15일 ~ 2018년 4월 4일(21일간)

4. 예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게재

5. 예고내용

- 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완화에 관한 사항 등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18. 4. 4.
- 나.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도시정책과(본관 1층)

7. 제출방법

가. 방문신청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본관 1층)

나. 팩스신청 : 041-840-2326

다. 우편신청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2552)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은 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2】

공주시 고시 제2018 - 호

웅진로 일부구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 간판정비사업 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4. .

공 주 시 장

□ 간판정비시범사업 계획

가. 사업명칭 : 웅진로 간판개선 사업

나. 사업위치 및 구간

- 웅진로 일부 구간 : 150m(의료원삼거리 ~ 국고개길 사거리)

다. 사업기간 : 2018. 1. ~ 12.

라. 사업예산 : 108,000천원

마. 사업내용

-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고시(안) 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업소당 4백만원 (자부담 10% 포함)이내 사업비 지원

※ 1점포당 2개의 간판 이내로 지원 :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 1개, 소형
돌출간판 1개

-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의체 구성

- 간판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내 건물주와 점포주 등으로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제1조(목적)

공주 구도심 상권밀집지역인 응진로 일부 구간(의료원삼거리 ~ 국고개길 사거리)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불법·노후광고물을 정비하고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3,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응진로 일부구간 : 150m 구간 (의료원삼거리 ~ 국고개길 사거리)

※ 정비시범구역 현황 및 위치도 : 【첨부문서】 참조

제4조(예산의 지원)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①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이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가로형), 돌출간판에 한한다.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곡각지점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돌출형 간판
 3.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약, 등)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벽면이용간판(가로형)의 표시방법
 -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되, 입체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70cm, 판류형 간판의 경우 크기는 100cm 이내로 표기한다.

-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입체형을 혼용하나 입체형을 권장하고 2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를 권장한다. 단, 건물특성상 가로간판 부착공간이 부족할 경우 5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6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규격은 가로 100cm(게시틀 포함 120cm)이내, 세로 100cm 이내, 두께 30c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⑤ 기타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 간판의 형태·서체 등 디자인은 공주시 웅진로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저채도·저명도 색상을 사용하되, 공주시경관기본계획권역별색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디자인 및 표시 등)

-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어울리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② 웅진로의 특성을 반영하되, 간판의 개성을 드러나게 디자인 하도록 한다.
- ③ 정비사업 시행 이후 설치하는 간판의 경우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은 가급적 광고물간 세로폭과 돌출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하고, 인접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 등)

-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단,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내용)

-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주표시 :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영문표기 등
(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2가지 이내로 표시)

② 주표기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보조 표시로 병행 하여야 한다.

제9조(색채)

① 색채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되 빨강, 검정 등의 원색을 지양하며, 바탕색으로 흑색 류나 적색류를 사용하는 경우 간판 전체의 1/2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② 다만,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조명)

① 광원은 높은 조도나 점멸사용을 금지하며 야간조명의 경우 고효율 저전력의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투과 매체에 의해 인식되는 간접 조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직접 노출 조명을 사용할 경우는 공주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③ 아름다운 야간 경관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조명 등의 특별 조성 조명의 경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정한 뒤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제12조(세로형간판·에드별륜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에드별륜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현수막·벽보 표시방법) 일체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지정 게시대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건물벽면의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총면적이 1㎡이내이어야 하며, 20cm이내의 띠 안에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② 브랜드명이나 상호와 같이 핵심적이고 간략한 표시를 권장하고, 재질은 반투명 소재를 권장한다. 또한 고채도와 원색의 사용과 실사사진의 부착을 금한다.
- ③ 다만,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외부가격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②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조명의 광원(光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간판의 디자인상 표시방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및 광고물的高품격화 또는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 하다.

제17조(사후관리)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간판을 신규설치·변경·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공주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른다.

2018년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첨부 2】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 【2018년 정비구역_고시예정】

개소	위 치	개소	위 치
1	웅진로 139(중동 210-1대)	21	웅진로 152-1(중동 232대)
2	웅진로 139(중동 210-4대)	22	웅진로 152-1(중동 231대)
3	웅진로 143(중동 209-2대)	23	웅진로 152(중동 228-1대)
4	웅진로 143-1(중동 208-2대)	24	웅진로 150(중동 228대)
5	웅진로 145(중동 205-2대)	25	웅진로 150(중동 227대)
6	웅진로 145-1(중동 203-1대)	26	웅진로 148-2(중동 221대)
7	웅진로 147(중동 180대)	27	웅진로 148-1(중동 220-1대)
8	웅진로 151-1(중동 173-2대)	28	웅진로 148(중동 222대)
9	웅진로 153(중동 161-2대)	29	웅진로 146(중동 218대)
10	웅진로 153(중동 161-1대)	30	웅진로 146(중동 217대)
11	웅진로 153-1(중동 155-25대)	31	웅진로 146(중동 216-3대)
12	웅진로 153-1(중동 155-26대)	32	웅진로 144(중동 216-12대)
13	웅진로 153-2(중동 155-11대)	33	웅진로 142-1(중동 215대)
14	웅진로 155(중동 155-5대)		
15	웅진로 155(중동 155-6대)		
16	웅진로 155-2(중동 157-3대)		
17	웅진로 158(중동 244-1대)		
18	웅진로 156-1(중동 235대)		
19	웅진로 156(중동 234-1대)		
20	웅진로 154(중동 233대)		

공주시 공고 제2018-416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공 주 시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5조)

-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11조)
-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사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2~14조)
- 지도감독 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5~1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8. 3. 15. ~ 2018. 3. 22. (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2.까지 공주시장(기업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6 FAX : 041-840-2323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이라 한다)의 구역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회 등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가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상인회 재정지원) 시장은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3. 시장(市場)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발생시설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장(市場),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협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수익금 사용 등)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금 정산 등) 수탁자는 상·하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주차장 조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8 - 448호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행정자치부 통보 전국표준안 조례명으로 변경
-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업무,권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납세자보호 안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바.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6조)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28조)

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제3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 3. 15. ~ 2018. 4. 4.(21일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전화: 840-8331/FAX: 840-231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 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3.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을 갖되,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과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과와 납세보호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00백만 원 이상의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알리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과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과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
2. 세무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제23조(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충민원과 별도로 납세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를 필요한 경우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 과제의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과에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1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연장결정 등)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
2.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

② 납세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과의 의견
2. 사실확인 결과 등
3.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 합니다.

2018. 3. 15.

공 주 시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공주시는 2017년에 재난이 2회 발생하여 총 피해는 8건 23,309천원이며, 복구는 8건 11,89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 분	피해내용		복구내용	
	피해건수(건)	피해액(천원)	복구건수(건)	복구액(천원)
계	8	23,309	8	11,891
호우	공공시설	-	-	-
	사유시설	8	23,309	8

- 재난 유형별로 호우 2회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23,309천원이며, 복구는 11,891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복구(재난지원금 지원)는 완료되었습니다.

- 우리 시의 재난발생현황은 호우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호우재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과, 29명으로 5년 평균과 비슷하며, 재난대응의 전문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1명을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6종으로 7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6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4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보다 재해위험요인이 소폭 증가되어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 - - - > 9·10등급/그룹 ‘마’ (위험)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538백만원으로 538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552백만원 보다 14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보다는 1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493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49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6백만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은 꾸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더욱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 각종 행사시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 협업기능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전년도보다 4개소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위험시설 1개소에 대한 정비는 미비함에 따라 조속한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에 대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4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은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으며, 노후장비의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을 하였으며,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을 지정하였습니다.

- ◆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전국 평균에 비슷한 39.6%를 보이고 있으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각종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9개를 작성·운용하고 있으며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해발생빈도의 감소,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강화,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추가 구축, 교육·훈련의 증가, 재난관리에 대한 지속적 홍보, 재난관리자원 적정량 비축, 재난관리기금의 적정액 확보 및 사용, 재난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정비 등이 우수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 제정,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 및 정비, 재난방지시설의 정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의 확대와 내진보강이 필요하며, 지역안전도가 4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한 쪽에 있으나 전년도보다 1등급 하락하였으므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자연재해 취약지역 및 예방시설의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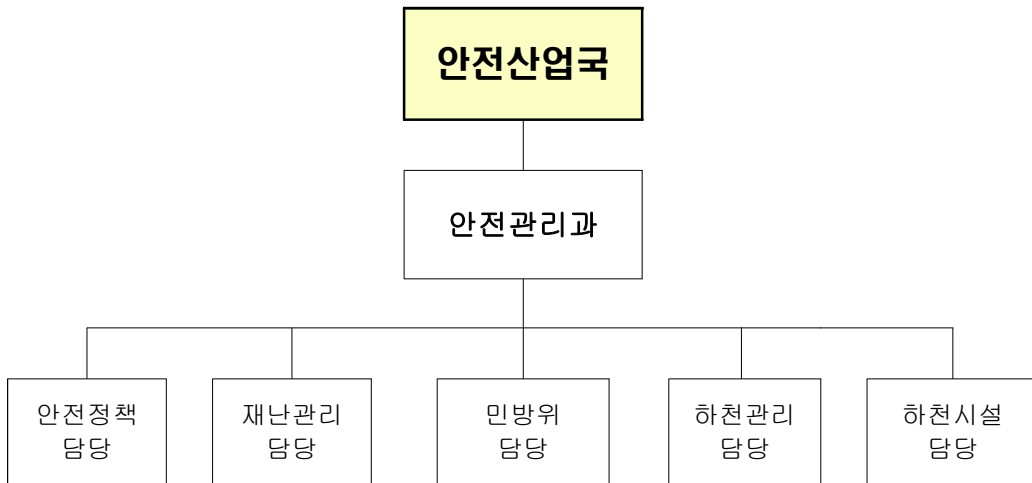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기 간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7.7.2.~11. '17.7.14.~16.	호우	- 공공시설 : 없음 - 사유시설 시설하우스 등	- 공공시설 : 없음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완료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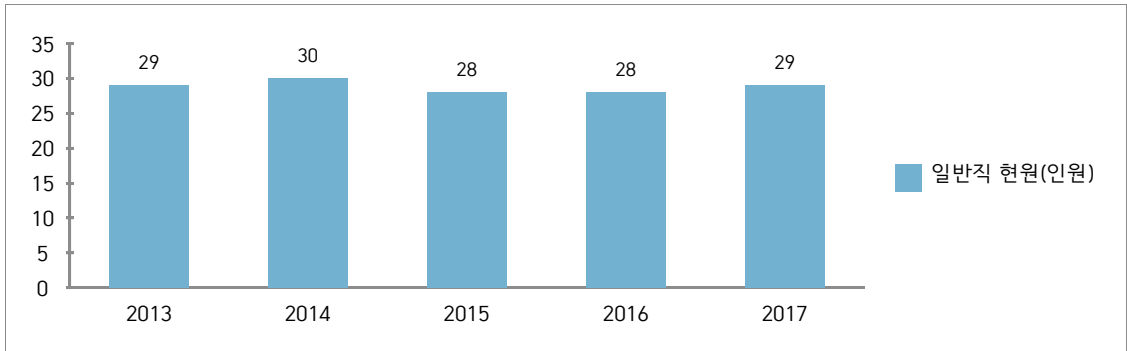


나. 정원

구 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0	26	1	1	8	9	5	2	4
현원	29	25	1	1	8	6	6	3	4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직 현원(인원)	29	30	28	28	29



☞ 일반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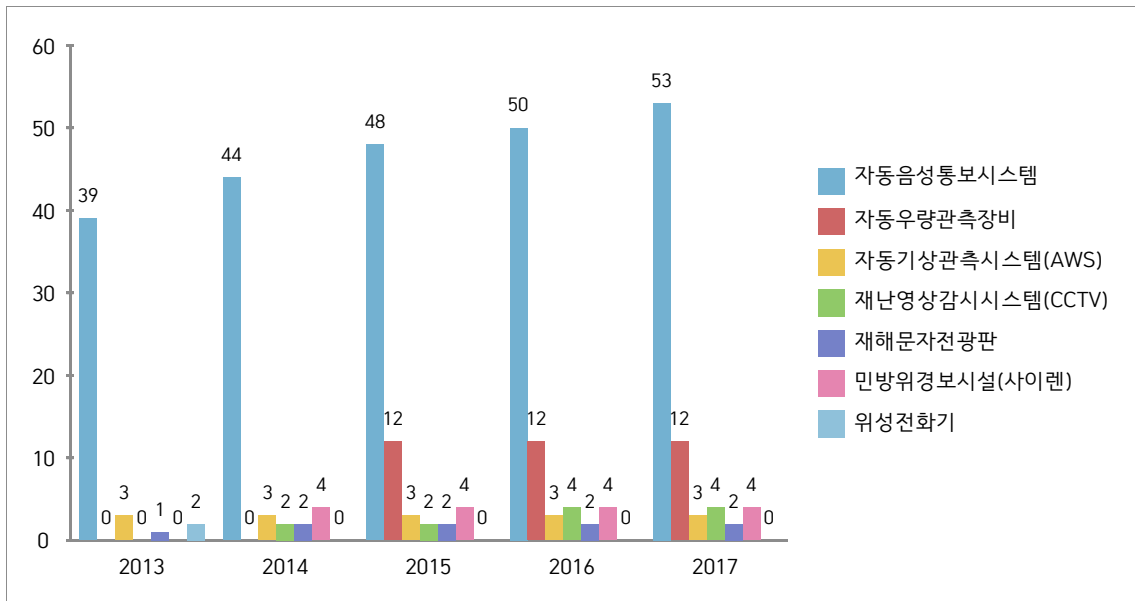
- 파견인원 복귀에 따른 현원 1명 증가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합 계	75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3	유구읍 외 15개 면·동
자동우량관측장비	12	시청별관,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월송동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3	웅진동, 유구읍, 정안면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	제민천, 금성동 배수펌프장 신관둔치공원 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	반포면, 신관금강공원둔치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4	유구읍사무소, 신관농협옥상, 옥룡정수장, 교동시청별관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9	44	48	50	53
자동우량관측장비	-	-	12	12	12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3	3	3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	2	2	4	4
재해문자전광판	1	2	2	2	2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	4	4	4	4
위성전화기	2	-	-	-	-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지속적 확충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대비 기본과정 (공동구재난)	4.17~4.18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2	
재난대비 기본과정 (보건의료재난)	6.15~6.16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재난대비 기본과정 (육상화물운송)	8.28~8.29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재난대비 심화과정 (감염병)	11.20~11.21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재난대비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12.18~12.19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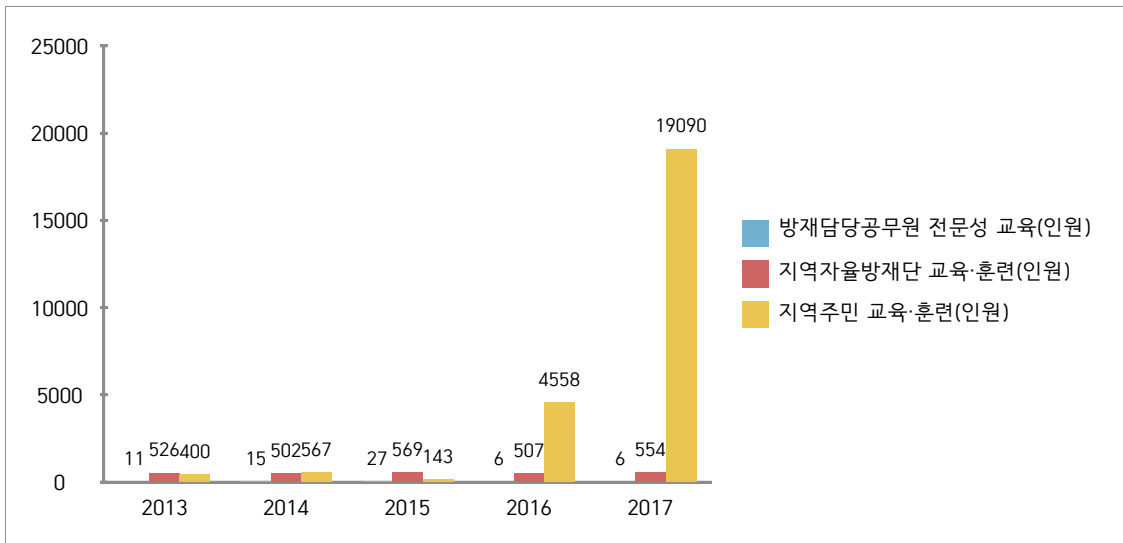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11월별	각읍·면·동	273	자체교육	자율방재단	
'17.4.3.~4.	부안	4	직무능력 강화교육	국민안전처	
'17.6.19.	충남도청	6	재난구호분야 교육(상반기)	충청남도	
'17.9.26.	리솜스파캐슬	45	재난관련 전문교육 및 힐링교육	충청남도	
'17.10.31.	자율방재단 사무실	20	겨울철 재난예방교육	공주시	
'17.11.17.	충남도청	6	재난구호분야교육 (하반기)	충청남도	
'17.12.5.	고마	200	정기교육	공주시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연중	관내 경로당	3,048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교통안전 교육	공주시
교통안전 교육	연중	안전체험 공원	16,042	심폐소생술, 소화기 교통안전교육 등	공주시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1	15	27	6	6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26	502	569	507	554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400	567	143	4,558	19,090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방재담당공무원은 신규자 발생시 및 연도별 지속적 교육·훈련 참석
- 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교육·훈련 실시
-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와 강력한 태풍 등의 재난에 대처하는데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 인원이 증가함.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17.10.27.	서울시 백범김구기념관	54	특강, 안전정책 홍보, 심폐소생술	행정안전부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인원수)	제보실적 (건)	처리실적(건)			비고
		완료	진행	불가	
141	362	313	46	3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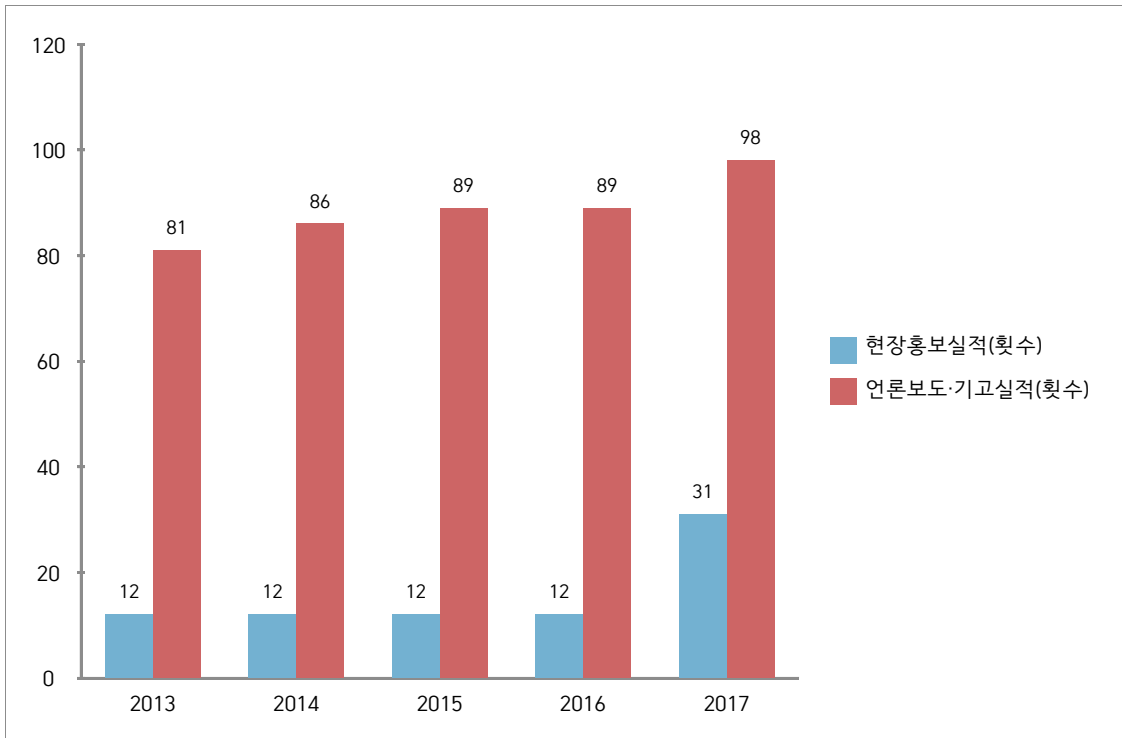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겨울철, 봄철, 물놀이 등 재난예방	1~12월	관내	2,977	
2	안전문화캠페인	폭염대비, 지진안전 등	1~12월	관내	554	
3	안전문화운동 안심순찰	안전순찰, 범죄예방홍보 등	1~12월	관내	3,600	
4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 등	11월	산성 시장	15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현장조치 매뉴얼로 안전한 공주시 만들기 총력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17.'3.'6.	각 신문사	
2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해결	풍수해보험 가입	'17.'3.20.	각 신문사	
3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정비	'17.8.29.	각 신문사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31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81	86	89	89	98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 매달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와 재난예방 및 복구 활동시 언론보도 중점 활용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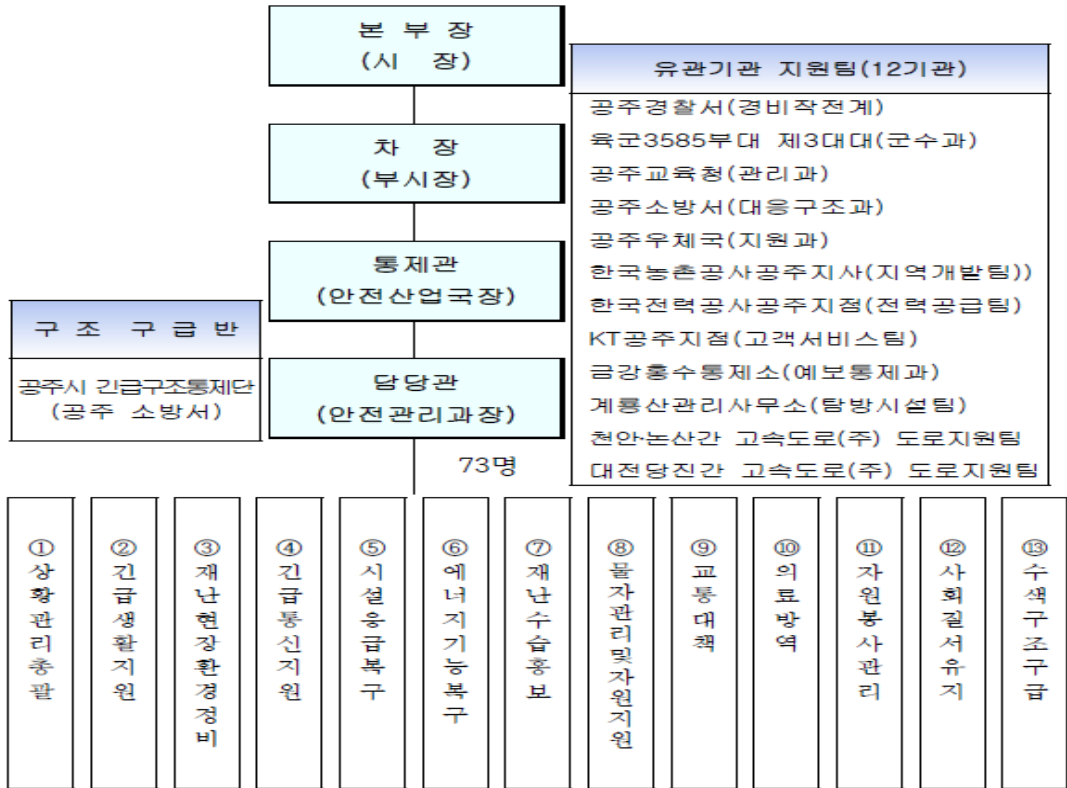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 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 • 위 원 : 3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 부(지역재난안 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시장 • 차장:부시장 • 통제관:안전산업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상황총괄반》

-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임 무
 -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도지사, 부지사, 재난담당부서, 중앙)
 -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처계획 수립보고
 -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 시·군·지대본 대응태세 점검
 - 지대본 가동시 업무 총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 재난대책본부장 특별지시 처리
 - 재난사태 선포(필요시)
 -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상황일지 작성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피해상황파악
 - 상시모니터링, 각종 여론정보수집, 상황근무자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 주관부서 : 사회과
- 임 무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실시
 - 임시주거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이재민 학교시설 이용시 장기수용
 - 기부금품 모집승인 및 관리
 - 의연금품 모집 허가
 - 복지대상자여부 파악, 통보
 - 장례지원, 정서·심리치료지원

《긴급통신지원》

- 주관부서 : 미디어담당관
- 임 무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 시 통신두절 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 민간기업(KT 등) 협조요청

《시설응급복구》

- 주관부서 : 건설과
- 임 무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에너지기능복구》

- 주관부서 : 기업경제과
- 임 무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 발생지역 광역 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자원지원》

-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임 무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 부족지역 파악지원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
 -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교통대책》

- 주관부서 : 교통과
- 임 무
 -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두절 지역 출입통제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교통수단 투입
 - 교통수단 증편, 연장 운영

《의료 및 방역서비스》

- 주관부서 : 보건소
- 임 무
 -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응급환자 수송헬기 지원, 군의관 응급환자 치료지원
- 침수지역 방역반 가동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 재난심리지원
- 가족연락관 파견

《재난현장 환경정비》

- 주관부서 : 환경자원과
- 임 무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현황 파악 관리
 - 육상, 해상 쓰레기 처리
 - 생활쓰레기 처리
 - 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처리현황 관리
 - 재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지도 확인
 - 유해화학물질 방재대책 추진

《자원봉사관리》

- 주관부서 : 사회과
- 임 무
 -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사회질서유지》

- 주관부서 : 공주경찰서, 시정담당관
- 임 무

-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수색·구조·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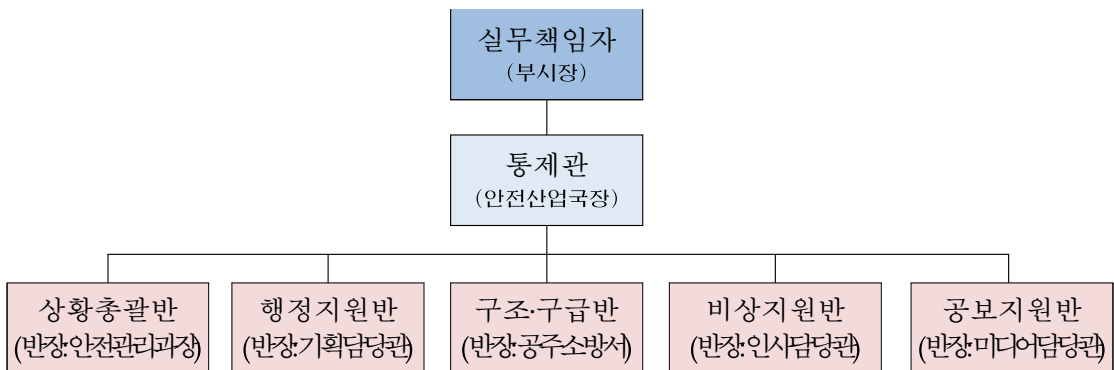
- 주관부서 : 공주소방서
- 임 무
 -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긴급구조현장지휘소 설치)
 -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치료 및 치료 전문병원 긴급후송
 -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재난수습홍보》

- 주관부서 : 시정담당관
- 임 무
 -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대책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해당부서와 공동대응)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8시간씩 3교대 근무원칙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명	활동시기	활동내용	방 법	비고
공주 소방서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화재진압,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 등 -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원인, 피해조사 등 기타자료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타	
공주 경찰서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산간, 계곡, 하천, 유원지 등 야영·등산객, 낚시꾼, 행락객 등 대피현황 -교통두절·통제 및 해제현황 -차량 안전지대 대피 및 자동차 운행자제 계도 현황 -재난지역 경비 및 방법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보고 등	인력지원 기타	
제3585부대 3대대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인명구조, 실종자 등 수색 현황 -주민대피·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질서유지를 위한 지원 -지원 인력·장비 등 응급복구 대민지원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타	
공주 교육청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학교시설 피해파악 및 이재민수용시설 지원 현황 -학교 휴교조치, 학생들의 응급복구 동원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보고 등	인력지원 기타	
공주 우체국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통신사고에 대비한 긴급복구 -우정통신망 정비 및 긴급 구호체계 정비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기타	
KT 공주지점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통신두절 및 피해 현황 -이재민, 응급복구 등을 위한 통신지원 현황 -통신관련 대민지원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기타	
한전 공주지점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임시전력공급 및 전력시설 응급복구 현황 -전기료 감면 및 전기용품 수리지원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기타	
금강홍수 통제소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홍수예보 -홍수조절을 위한 댐 수문방류 승인 -수위·강수량 자료 제공	인력지원 기타	

기관명	활동시기	활동내용	방 법	비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계룡산 관리사무소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산간, 계곡, 유원지 등 탐방객의 출입통제 현황 -등산객, 대피소 인원 등 강제 하산조치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기타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고속도로 두절·통제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기타	
한국농촌 공사 공주지사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가동 현황 및 저수지 사전방류 현황 -저수지, 취입보, 양·배수장, 용·배수로, 수문 등 수 리시설 사전점검 현황 -수리시설, 농경지 피해 및 복구 현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기타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고속도로 두절·통제 현황 -교통취약구간 제설작비 확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기타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기상특보발령시 -피해발생후	-고속도로 두절·통제 현황 -교통취약구간 제설작비 확충 -기타 자료 등 요구시 수집 보고 등	인력지원 장비지원 기술지원 기타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공주시 건축물관리 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016.12.01	지붕제설 범위 확대
공주시사전재해영향 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6.05.11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공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1.11.15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5.04.18	
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011.09.1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4.01.29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13.02.15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5.04.18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5.08.01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총 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터널	육교	매설이유형구멍	오염시설	프린팅공장	수상레저시설	소계	고압전력시설	방사선	관람장	노유자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를	수련시설	숙박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위락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중단면구조상장	전차	판매시설
302	112	105	2	3	-	1	-	1	190	3	1	1	3	2	1	3	3	122	12	1	3	24	3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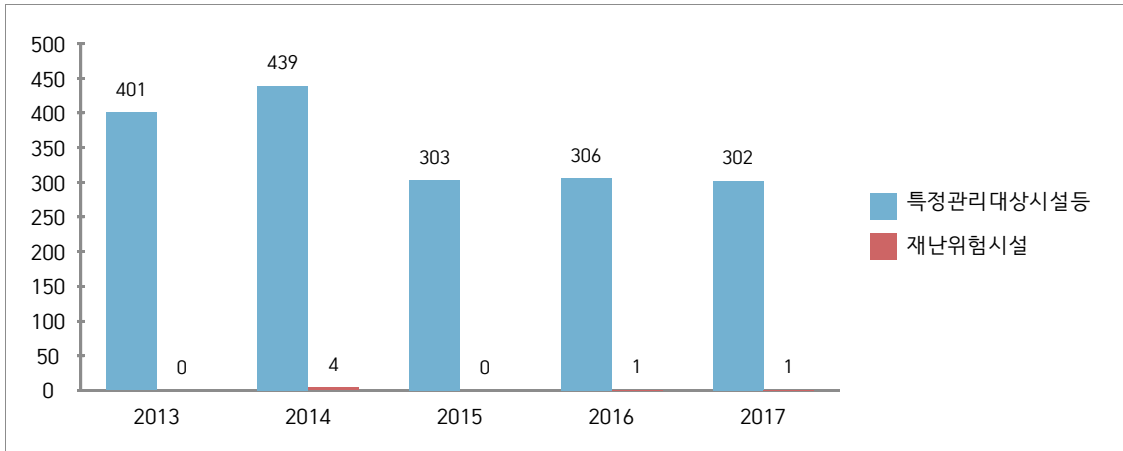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302	302	171	110	20	1	1	-	
시설물	112	112	13	80	18	1	1	-	
건축물	190	190	158	30	2	-	-	-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 **A등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이상이 없는 시설)
- ※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시설
- ※ **E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시설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등	401	439	303	306	302
재난위험시설	-	4	-	1	1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 전년도에 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아파트 준공 2개소 및 중복입력 삭제 2개소로 총 4개소 감소하였으며
- 재난위험시설은 변동없음.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교량	화월교	L=143 B=7.5	공주시	2015.1.1.	재가설	1,500	통행 제한	2019

☞ 해소계획

- 농어촌도로 확포장 구간에 포함된 교량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병행 실시할 계획임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수시점검	2017.1.1. ~12.31.	302	302	6	시 설 관 리 부 서 및 안 전 관 리 자 문 단	현지시정 및 향후조치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교량	화월교		공주시	'17.2.13.	'17. 2.15.	2	안내표지판 설치
대규모 공사장	(주)효성		민간	'17.6.22.	'17. 6.23.	-	배수로정비
대규모 공사장	코아루		민간	'17.6.22.	'17. 6.23.	-	침사지 및 배수로정비
육교	옥룡 육교		공주시	'17.6.20.	'17. 12.20.	30	도색
대규모 공사장	(주)흥화		민간	'17.6.23.	'17. 6.25.	-	배수로정비

☞ 안전점검 및 정비실적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도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지시정 포함 5건 조치완료하였고, 향후 조치(신관육교_도색) 1건은 2018년 예산 확보후 정비 시행예정임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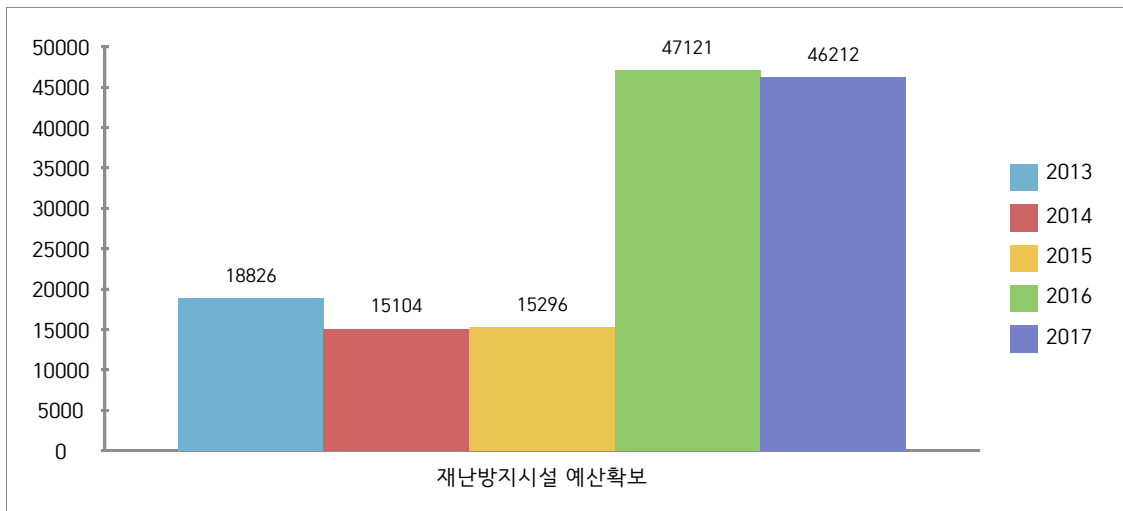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소하천정비 사업 등	정안, 신평	2개소	2017-2018	5,600	재해사전예방
하천정비사업 등	반포 등	하천정비 4개소	2017-2019	10,367	재해사전예방
하천기성제정 비사업 등	유구 등	하상정비 등	2017	1,180	재해위험 해소
태봉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태봉	하천정비 1개소	2015-2016	350	재해사전예방
유구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유구, 신평	하천정비 1개소	2015-2018	10,000	재해사전예방
계실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곡	하천정비 1개소	2017-2019	1,000	재해사전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옥룡	1개소	2017-2018	727	재해위험 해소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등	유구 등	취약지구정비 등	2017	1,245	재해위험 해소
하수관거정비 사업	웅진	하수관로정비 1개소	2017-2019	714	재해위험 해소
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	유구 등	증설 2개소 신설 2개소	2017-2018	5,830	재해위험 해소
저수지 정비사업	이인 등	저수지 정비 67개소	2017	3,498	재해사전예방
용배수로 정비사업	사곡 등	용배수로 정비 12개소	2017	538	재해위험 해소
취입보 정비사업	신평 등	취입보 정비 6개소	2017	380	재해위험 해소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	유구 등	관정 등		632	재해사전예방
사방댐설치	유구 등	2개소	2017	1,001	재해위험 해소
교량유지보수 사업	웅진 등	교량보수 8개소	2017	3,000	재해위험 해소
방재시스템 정비사업	유구 등	시스템정비 등	2017	150	재해사전예방

-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 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낙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8,826	15,104	15,296	47,121	46,212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전년도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와 비슷함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
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PP 포대	말목	비닐 명석	PE 필름	보온 덮개	백자루
		개	개	개	개	개	개
총계	47,374	43,429	1,490	141	130	143	2,041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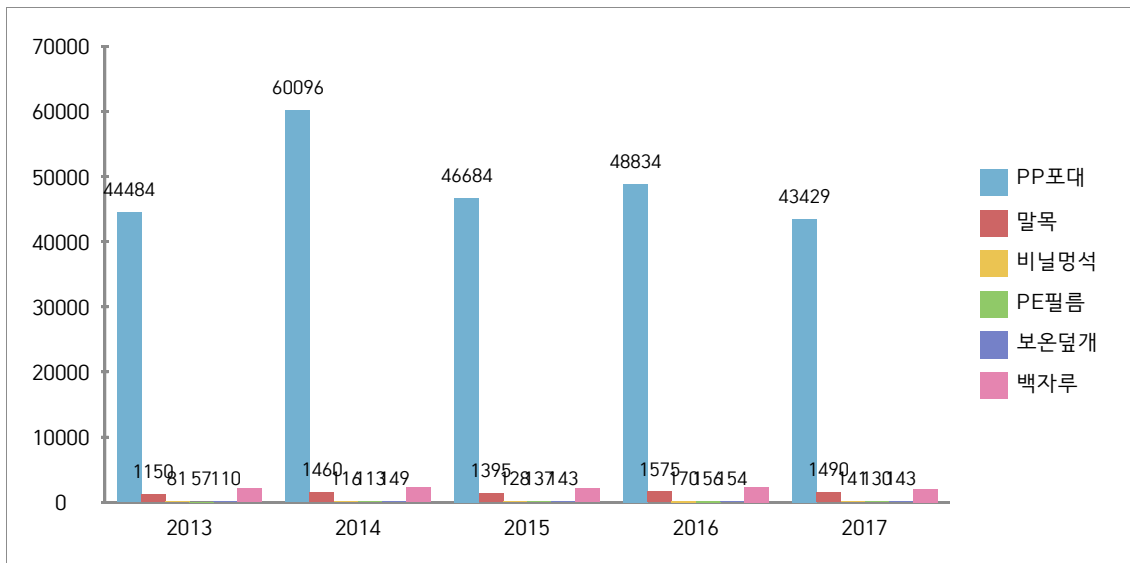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11	112	344	19	2,929	5
병원	10	96	308	18	2,929	5
보건소	1	16	36	1	-	-
기타	-	-	-	-	-	-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445	23,855	28	13,390	6	190	411	10,275	-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

방재물자 종류별	2013	2014	2015	2016	2017
PP포대	44,484	60,096	46,684	48,834	43,429
말목	1,150	1,460	1,395	1,575	1,490
비닐명석	81	116	128	170	141
PE필름	57	113	137	156	130
보온덮개	110	149	143	154	143
백자루	2,084	2,274	2,057	2,334	2,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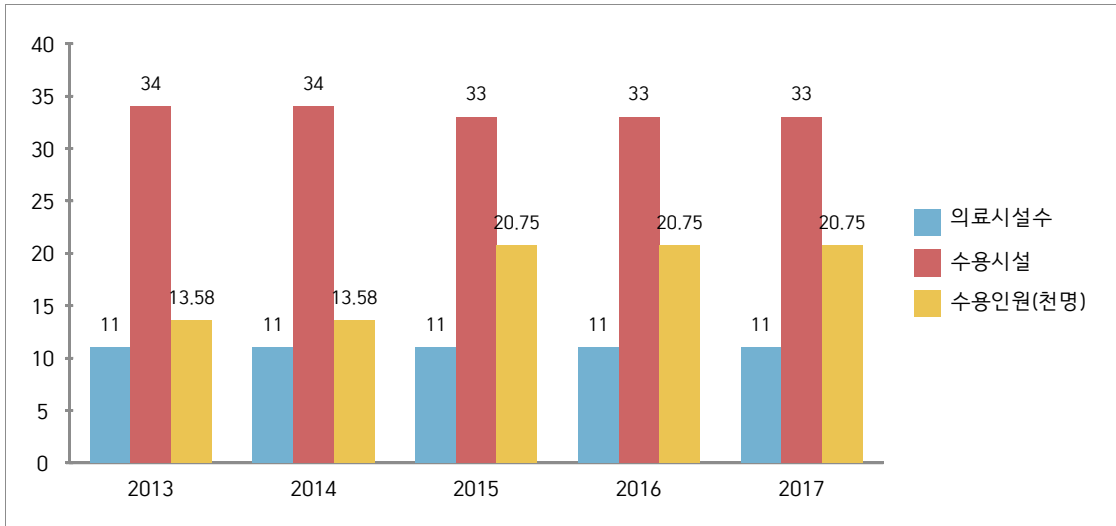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최근 10년간 사용량에 따른 부족분 확보로 품목별 수량 감소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시설수		11	11	11	11	11
수용시설	개소	34	34	33	33	33
	수용인원 (천명)	13.58	13.58	20.75	20.75	20.75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 전년도와 의료 변동사항 없으며, 수용시설, 수용인원도 전년도와 동일함.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펌프차	고가	화학	물탱크	구조	배연차	구급차	기타
총계	39	16	1	1	2	1	1	8	9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덤프	화물트럭	로올러	기타
총계	16	1	3	4	6	1	1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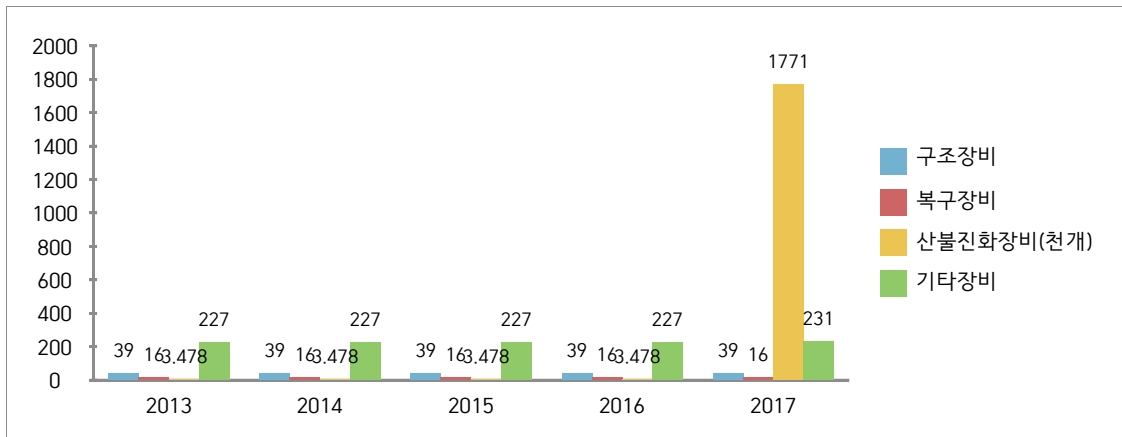
구분	계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갈퀴	소형펌프	기타
총계	1,771	22	625	836	14	274

◆ 기타장비

구분	계	양수기	호스
총계	231	212개	18.37km

◇ 연도별 비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장비	39	39	39	39	39
복구장비	16	16	16	16	16
산불진화장비(천개)	3.478	3.478	3.478	3.478	1,771
기타장비	227	227	227	227	231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구조장비 및 복구장비는 변화가 없으며
- 산불진화장비는 전년도 3,478개였으나 노후장비 불용처리로 1,771개로 감소하였으나, 진화차량 및 신규장비 구입으로 보완하였으며, 진화안전장비 274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 기타 장비는 전년도 227대였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양수기를 추가 구입함으로 인해 231대로 증가하였음.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통신	화공	지적	기계
기술	168	71	28	18	13	5	5	13	15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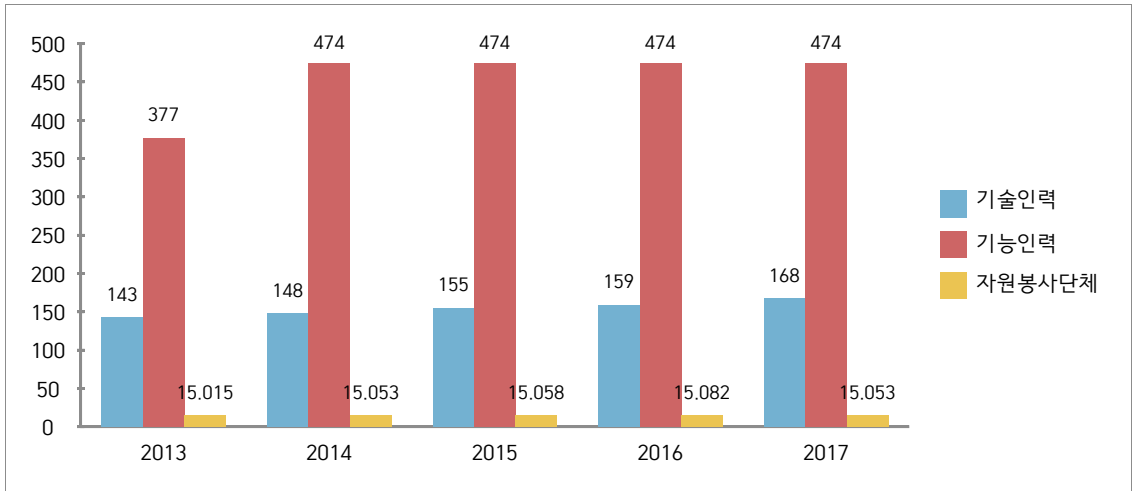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중기 운전	기타
인원	474	61	27	14	-	-	59	216	97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인명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기타 (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15,053	543	-	35	23	273	350	395	150	58	13,226	-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술인력	143	148	155	159	168
기능인력	377	474	474	474	474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천명)	15.015	15.053	15.058	15.082	15.053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으며
- 특수단체 및 봉사단체는 단체별 회원 가입수에 따라 변동됨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7. 10. 30.	행정안전부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7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313	123	1	183	39.6
공공시설물	236	103			43.6
일반건축물	77	20	1	183	27.2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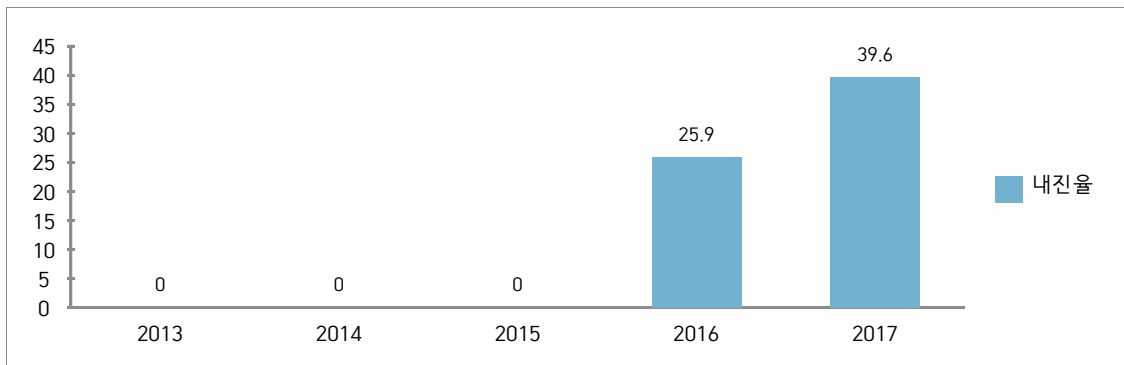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진율	-	-	-	25.9	39.6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국 평균에 해당하나, 일반건축물 예산 부족으로 내진성능보강 예산 미확보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보강완료	보강완료	설치완료	
종합상황실	보강완료	보강완료	설치완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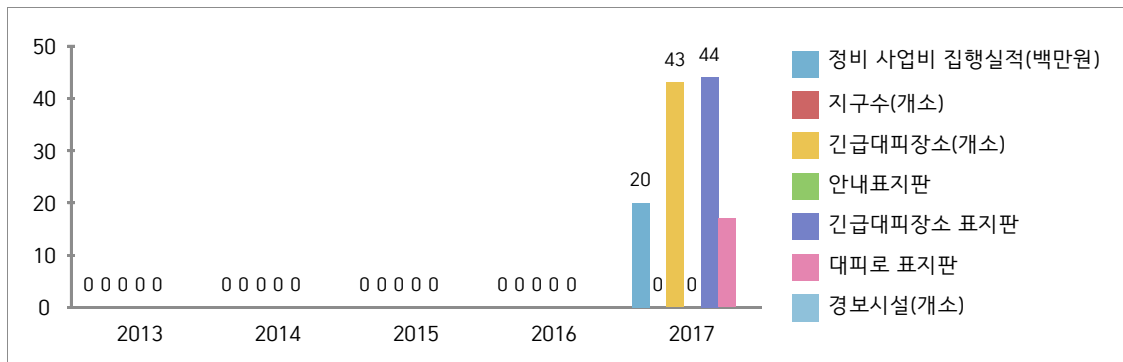
-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성능 확보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공주시	실내대피소(11) 옥외대피소(32)	61		44	17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백만원)		-	-	-	-	20
지구수(개소)		-	-	-	-	
긴급대피장소(개소)		-	-	-	-	43
표지판	안내표지판	-	-	-	-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	-	-	-	44
	대피로 표지판	-	-	-	-	17
경보시설(개소)		-	-	-	-	



☞ 정비 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2017년 최초 작성으로 증감없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538백만원	538백만원	538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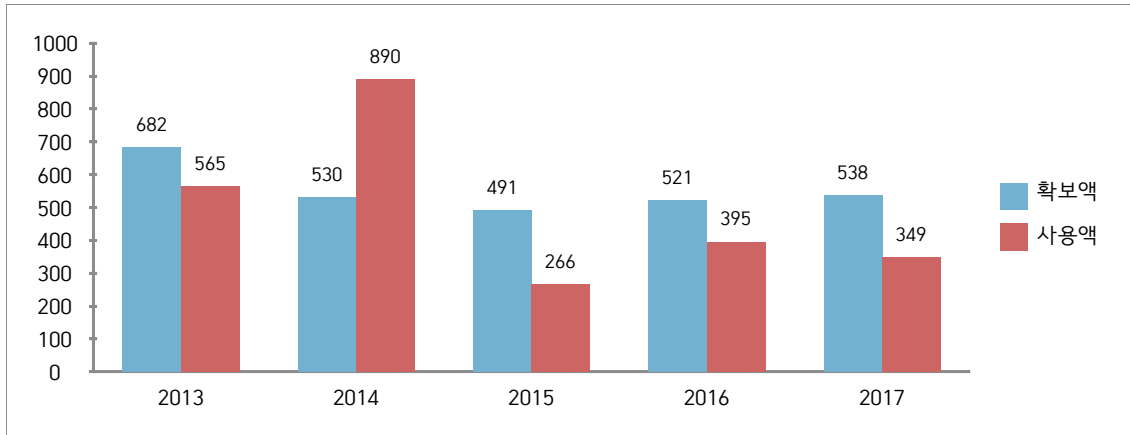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확보액		682	530	491	521	538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301	159	62	351	290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	-	-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264	712	204	44	5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19	-	-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 법정적립기준에 맞게 확보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을 위해 사용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 수 해	안전관리과	2015	풍수해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지 진	안전관리과	2014	지진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대형화산폭발	안전관리과	2014	화산폭발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시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가뭄	안전관리과	2015	가뭄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산 불	산림과	2014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불 상황단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임무·역할, 조치사항 및 절차와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자원과	2014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유출사고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자원과	2014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수록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자원과	2014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수록
댐 붕괴	안전관리과	2014	대규모 홍수 및 지진발생 등으로 대형댐이 붕괴되었을 때 관련 기관의 임무,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
고속철도대형사고	교통과	2015	고속철도에서의 대형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허가과	2015	건축물에서의 화재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기업경제과	2014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수록
다중밀집시설붕괴대형 사고	허가과	2015	건축물에서의 붕괴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가축질병	축산	2015	가축질병 위기상황 발생 시 공주시가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감염병	보건과	2015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보건의료	보건과	2015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하여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
식용수	수도과	2014	수질오염, 자연재해, 재난 및 테러,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식·용수 공급시스템의 파괴 및 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저수지붕괴	건설과	2015	저수지붕괴 사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산사태	산림과	2015	산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육상화물 운송	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운송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기반체계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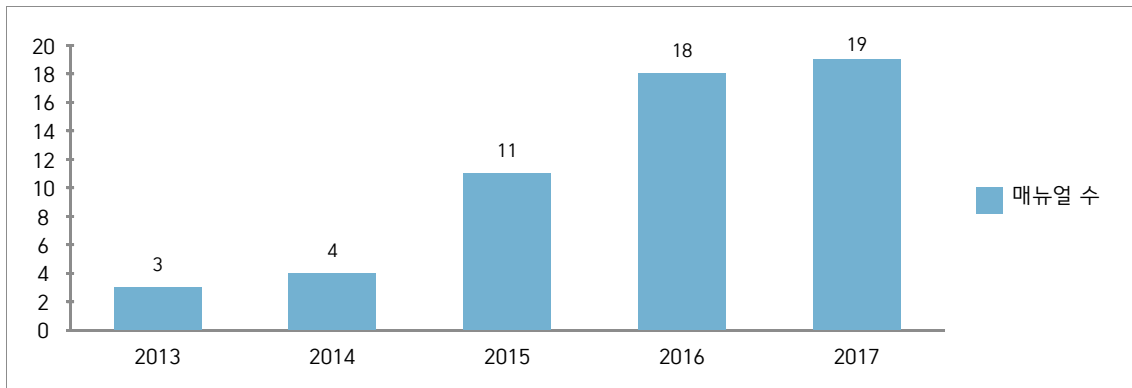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고속철도 대형사고	2017. 6.	위기 관리매뉴얼(표준/실무)정비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2017. 1.	위기 관리매뉴얼(표준/실무)정비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다중밀집시설 붕괴대형사고	2017. 1.	위기 관리매뉴얼(표준/실무)정비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저수지 붕괴	2017. 8.	위기 관리매뉴얼(표준/실무)정비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육상화물운송	2017. 10.	위기 관리매뉴얼(표준/실무)정비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산불	2017. 8.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일제정비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대형화재	2017. 6. 14.	대형화재 현장 훈련	협업기능반별 구체적 임무와 역할 카드 작성 실전 대응 능력 향상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017. 10. 3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난현장 훈련	협업기능반별 구체적 임무와 역할 카드 작성 실전 대응 능력 향상	안전 한국 훈련

◆ 년도별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뉴얼 수	3	4	11	18	19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사회·경제·환경 등에 영향이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행동매뉴얼 제·개정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안전도지수	등 급
진단결과	0.412	0.825	0.770	0.503	4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서면 및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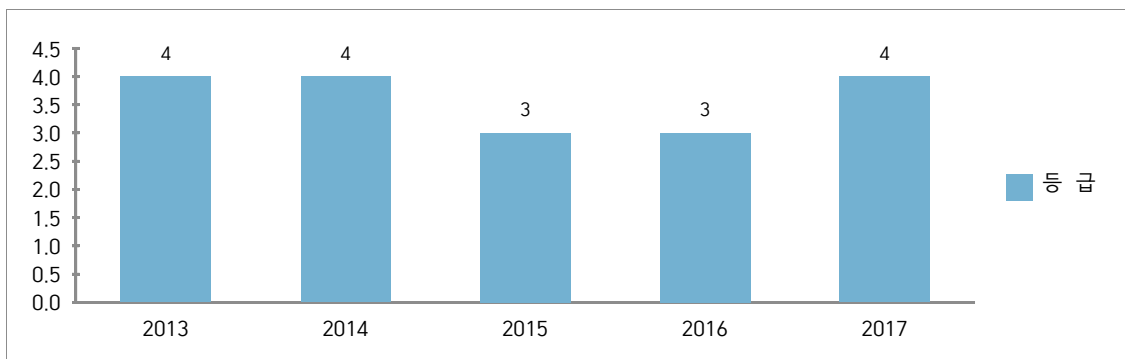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재해위험요인 : 지역별 재해 발생빈도·피해규모·취약요인 진단
 - 예방대책추진 :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추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예방시설정비 : 재해예방을 위해 방재시설물(하천·하수관로·배수펌프장 등) 및 위험지역 정비 실적 진단

* 1등급 (안전) <-----> 10등급 (위험)

◇ 년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등 급	4	4	3	3	4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의 소폭 증가로 재해에 대한 위험도는 전년보다 1등급 증가한 4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한 등급임.
- 재해위험요인이 소폭 증가로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과 재해예방을 위해 방재시설물 및 위험지역 정비 실적의 개선이 필요함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여름철 폭염대비	'17. 12. 26.	행정안전부	우수	
안전정책 및 안전문화	'17. 12. 29.	충청남도	우수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공주시 안전관리과 (담당 : 윤석봉, 전화 : 041-840-865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18 - 480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목요일 근무자와 달리 익일 휴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많은 부담 초래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 근무자에 대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당직근무 부담 완화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서무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2064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근무가 끝난 날을”을 “근무 종료일에”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u>근무가 끝난 날</u>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 ----- ----- -----<u>근무 종료일에</u> ----- -----<u>.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u></p>

소하천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15일

공 주 시 장 (직인)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유구천	조피골천	유구읍 탑곡리 산85	유구읍 탑곡리 495	0.600	소하천 기능 상실
"	증상골천	유구읍 입석리 525	유구읍 입석리 425-1	0.560	"
"	소청골천	유구읍 신영리 산1-1	유구읍 신영리 236-1	0.960	"
"	안뜸천	유구읍 신영리 152	유구읍 신영리 235-1	0.790	"
"	장장골천	유구읍 신영리 842-3	유구읍 신영리 742-2	0.580	"
"	작은여드니천	유구읍 신영리 산87-4	유구읍 신영리 790	1.350	"
"	뱀골천	유구읍 신영리 38	유구읍 신영리 362-1	1.700	"
"	산수골천	유구읍 유구리 158	유구읍 유구리 226-2	0.730	"
"	치성골천	유구읍 유구리 305	유구읍 유구리 254-1	0.840	"
"	안양골천	유구읍 만천리 산47	유구읍 만천리 499-1	0.880	"
"	불당골천	유구읍 문금리 27-1	유구읍 문금리 99	1.100	"
"	앙골천	유구읍 명곡리 477	유구읍 명곡리 498	0.64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유구천	사기점골천	유구읍 명곡리 산70	유구읍 명곡리 343	1.030	소하천 기능 상실
"	음실천	유구읍 녹천리 산85	유구읍 녹천리 31-1	1.240	"
"	천옥천	유구읍 노동리 503	유구읍 노동리 340	0.800	"
"	덜골천	유구읍 노동리 453	유구읍 노동리 378-1	0.620	"
"	가늌골천	유구읍 노동리 10	유구읍 노동리 45	1.390	"
"	아래가늌골천	유구읍 노동리 422	유구읍 노동리 77	0.890	"
"	안골천	유구읍 백교리 373	유구읍 백교리 450	0.630	"
"	뒷골천	유구읍 백교리 368-3	유구읍 백교리 354	0.670	"
"	수작골천	유구읍 백교리 367	유구읍 백교리 208	0.620	"
"	선학동천	유구읍 동해리 678	유구읍 동해리 303	0.560	"
"	국산골천	유구읍 동해리 산134	유구읍 동해리 114-2	0.680	"
"	범아기천	유구읍 동해리 산134	유구읍 동해리 114-2	1.370	"
"	큰삼밭천	유구읍 동해리 602	유구읍 동해리 535-2	1.110	"
정안천	산뱅이천	정안면 산성리 198-1	정안면 산성리 181	0.520	소하천 기준미달
"	용문골천	정안면 내문리 353	정안면 내문리 108-3	0.570	"
"	고덕골천	정안면 월산리 652	정안면 월산리 288	1.230	"
"	움말천	정안면 보물리 58	정안면 보물리 193-1	0.890	"
"	보물천	정안면 보물리 46	정안면 보물리 218-6	1.120	"
"	오래골천	정안면 태성리 241	정안면 태성리 140-1	1.280	"
"	수리골천	정안면 인풍리 13	정안면 인풍리 90-2	1.030	"
유구천	정골천	신풍면 백룡리 23-1	신풍면 백룡리 750-1	1.030	소하천 기준미달
"	복골천	신풍면 영정리 414	신풍면 영정리 482	0.740	"
"	절토골천	신풍면 화흥리 산1-5	신풍면 화흥리 143	0.620	"
"	화양천	신풍면 화흥리 108-6	신풍면 화흥리 214	0.600	"
"	학동천	신풍면 선학리 377	신풍면 선학리 45	0.650	"
"	냉정천	신풍면 영정리 산40	신풍면 영정리 345-12	1.200	"
"	유투정천	신풍면 쌍대리 2	신풍면 쌍대리 267	0.810	"
"	저우니골천	신풍면 쌍대리 766	신풍면 쌍대리 677	0.620	"
"	용못천	신풍면 백룡리 598-2	신풍면 백룡리 766-3	1.35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유구천	개터골천	신평면 봉갑리 287	신평면 봉갑리 137	0.670	소하천 기준미달
"	삼바골천	신평면 봉갑리 100	신평면 봉갑리 74	0.760	"
"	줄바위천	신평면 봉갑리 283	신평면 봉갑리 194-2	0.590	"
"	구산지천	신평면 조평리 555	신평면 조평리 627	0.510	"
"	양지뜸천	신평면 조평리 95-1	신평면 조평리 846-7	0.900	"
유구천	산수골2천	사곡면 해월리 378-13	사곡면 해월리 79	0.540	소하천 기능 상실
"	황골천	사곡면 호계리 608-1	사곡면 호계리 587-3	0.810	"
"	강당천	사곡면 호계리 508	사곡면 호계리 286-2	0.810	"
"	국제1천	사곡면 화월리 233-54	사곡면 화월리 233-4	0.600	"
석목천	삼밭골천	사곡면 신영리 85-1	사곡면 신영리 65-1	0.820	"
유구천	뒷골2천	사곡면 부곡리 346	사곡면 부곡리 261-1	0.540	"
"	아양골천	사곡면 운암리 168-1	사곡면 운암리 511	0.770	"
"	오송골천	사곡면 가교리 526	사곡면 가교리 613	0.630	마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	산제당골천	사곡면 가교리 721	사곡면 가교리 668	0.710	
"	새알골천	사곡면 가교리 711	사곡면 가교리 641-2	0.570	
"	서뜸천	사곡면 대중리 221	사곡면 대중리 315-5	0.880	소하천 기능 상실
"	용골천	사곡면 계실리 478	사곡면 계실리 255-4	0.510	"
"	호계천	사곡면 신영리 산32-28	사곡면 신영리 679	0.960	"
"	안용수골천	사곡면 유통리 190	사곡면 유통리 124	0.600	"
"	불당골천	사곡면 유통리 47	사곡면 유통리 101	0.530	"
"	삼박골천	사곡면 월가리 708	사곡면 월가리 311-3	0.680	"
"	윗다락골천	사곡면 월가리 186	사곡면 월가리 255	0.900	"
"	무정골천	사곡면 월가리 380	사곡면 월가리 389-1	0.550	"
"	강탄천	사곡면 월가리 414	사곡면 월가리 1034-1	1.100	"
"	월은동2천	사곡면 화월리 276-5	사곡면 화월리 250-6	0.530	"
금강	성머리천	우성면 옥성리 175	우성면 옥성리 138-1	0.500	소하천 기능상실
"	뒷골1천	우성면 옥성리 340	우성면 옥성리 393-2	0.750	"
"	뒷골2천	우성면 옥성리 산29-1	우성면 옥성리 397	0.730	"
"	마그름2천	우성면 오동리 152	우성면 오동리 26-5	0.87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도천	경사천	우성면 내산리 521-2	우성면 내산리 505-3	0.940	소하천 기능상실
"	역골천	우성면 도천리 315	우성면 도천리 77-1	1.180	"
"	남비뜰1천	우성면 신용리 5-2	우성면 신용리 187-1	1.240	"
"	남비뜰2천	우성면 신용리 178-4	우성면 신용리 208	0.650	"
유구천	대문안1천	우성면 대성리 609	우성면 대성리 542-1	0.530	"
"	절골천3	우성면 대성리 60	우성면 대성리 1	0.510	"
보흥천	숫골천	우성면 보흥리 787	우성면 보흥리 405-1	1.080	"
"	느락골천	우성면 보흥리 산76-9	우성면 보흥리 591-3	0.720	"
정안천	상대천	우성면 목천리 767	우성면 목천리 444-4	0.610	"
"	부영고천	우성면 반촌리 산55	우성면 반촌리 227-1	0.520	"
"	굴량골1천	우성면 동곡리 167-2	우성면 동곡리 13-4	0.910	"
"	굴량골2천	우성면 동곡리 167-2	우성면 동곡리 13-2	0.900	"
"	황고개천	우성면 동곡리 261-2	우성면 동곡리 290-1	0.690	"
유구천	매대이천	우성면 방흥리 193	우성면 방흥리 92-8	0.760	"
"	함작골천	우성면 방문리 928	우성면 방문리 632-1	1.020	"
"	지계실천	우성면 단지리 106	우성면 단지리 62	0.830	"
"	철목천	우성면 상서리 405	우성면 상서리 701	0.990	"
대교천	덕재천	의당면 덕학리 30	의당면 덕학리 51	0.740	소하천 기능상실
"	국사천	의당면 덕학리 193	의당면 덕학리 72	0.950	"
"	서대천	의당면 덕학리 208-1	의당면 덕학리 249	0.630	"
"	도신천	의당면 도신리 59	의당면 도신리 10-2	2.100	"
"	신성천	의당면 도신리 산3-6	의당면 도신리 665-1	0.500	"
"	방동천	의당면 도신리 산1-11	의당면 도신리 662-1	0.510	"
"	신촌천	의당면 도신리 산13	의당면 도신리 486-1	0.600	"
"	월계천	의당면 중흥리 368	의당면 중흥리 586-1	0.800	"
"	대평천	의당면 중흥리 347	의당면 중흥리 587-3	0.680	"
"	웃말천1	의당면 중흥리 산41-2	의당면 중흥리 648-8	0.540	"
"	궁골천	의당면 중흥리 산1	의당면 중흥리 125-1	1.160	"
정안천	중바위천	의당면 두만리 산48-4	의당면 두만리 216	0.95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정안천	중방천	의당면 두만리 228-5	의당면 두만리 258	1.070	소하천 기능상실
"	샘골천	의당면 월곡리 274	의당면 월곡리 256	1.310	"
"	울정천	의당면 울정리 217	의당면 울정리 104-8	1.030	"
"	오류동천	의당면 오인리 363-3	의당면 오인리 53-10	1.020	"
석장천	구절천	석장리동 250	석장리동 398	1.136	소하천 기능상실
"	구배천	석장리동 1	석장리동 233	0.700	"
월송천	먹우천	동현동 444	동현동 436	0.530	"
"	요송천	송선동 478	송선동 512-5	0.640	"
"	요골천	송선동 529	송선동 514	0.510	"
"	계흥천	동현동 639-2	동현동 721-1	0.540	"
정안천	지동천	동현동 산1-5	동현동 90	0.590	"
"	동하천	동현동 203	동현동 164-2	0.510	"
"	큰말천	송선동 319	송선동 427	1.320	"
월송천	옹골천	월송동 485-8	월송동 448	0.575	도시계획도 로 반영
제민천	느랭이천	금학동 119-1	금학동 117-1	0.500	소하천 기능상실
박상천	우투먹골2천	웅진동 649	웅진동 622	0.500	"
검상천	어곡천	태봉동 438	태봉동 449-3	0.620	"
대학천	서당골천	탄천면 이곡리 96	탄천면 이곡리 312	2.120	소하천 기준미달
운곡천	홍성골2천	탄천면 운곡리 344-2	탄천면 운곡리 233	1.100	"
"	동촌천	탄천면 견동리 179	탄천면 견동리 454-4	0.920	"
"	윗고랑천	탄천면 유하리 27-1	탄천면 유하리 433	0.900	"
"	오룡골천	탄천면 국동리 산18-8	탄천면 국동리 411	0.790	"
중평천	디안골천	탄천면 삼각리 산31	탄천면 삼각리 56-3	0.550	"
"	작은선덕천	탄천면 송학리 155	탄천면 송학리 188-1	0.850	"
"	명막골천	탄천면 성리 125	탄천면 성리 379-2	0.750	"
"	고논미천	탄천면 분강리 산 4	탄천면 분강리 304-3	0.700	"
"	민전골천	탄천면 분강리 110	탄천면 분강리 206	0.510	"
석성천	채골천	탄천면 남산리 산95-1	탄천면 남산리 499	0.700	"
"	송주골천	탄천면 남산리 산95-1	탄천면 남산리 산104	0.50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석성천	작은맘마골천	탄천면 남산리 578	탄천면 남산리 466	0.600	소하천 기준미달
"	뽕박골천	탄천면 남산리 667	탄천면 남산리 354-2	0.760	"
"	안골천	탄천면 남산리 산139-1	탄천면 남산리 768	1.000	"
"	내동천	탄천면 광명리 산72-11	탄천면 광명리 637-4	1.540	"
"	학골천	탄천면 신영리 497-1	탄천면 장선리 95-2	0.970	"
"	넘은골천	탄천면 안영리 29-1	탄천면 안영리 33-1	0.600	"
"	송곡천	탄천면 광명리 산15-2	탄천면 광명리 339	0.500	"
금강	삭막골천	이인면 운암리 산7-2	이인면 운암리 216	0.570	소하천 기준미달
운암천	오디미골천	이인면 운암리 산54-2	이인면 운암리 74	0.700	"
"	은내미골천	이인면 운암리 108	이인면 운암리 119	0.700	"
용성천	유골천	이인면 용성리 산13-1	이인면 용성리 646	0.820	"
"	웃돌천	이인면 용성리 산20-1	이인면 용성리 464	0.710	"
"	오속골천	이인면 오룡리 14	이인면 오룡리 123-2	0.530	"
"	조정천	이인면 오룡리 154	이인면 오룡리 324-1	1.170	"
"	냉이골천	이인면 오룡리 산2-15	이인면 오룡리 322-1	0.750	"
"	본오룡천	이인면 오룡리 184	이인면 오룡리 321-1	0.710	"
"	상골천	이인면 오룡리 204-2	이인면 만수리 272-1	0.780	"
"	달산천	이인면 달산리 산3-1	이인면 달산리 32-1	1.250	"
유구천	산막골천	이인면 산의리 산13-19	이인면 산의리 261	0.650	"
용성천	수랑천	이인면 이인리 산27-1	이인면 이인리 58-3	0.530	"
"	강사천	이인면 구암리 426	이인면 구암리 293-1	1.180	"
"	배암천	이인면 목동리 산40-2	이인면 목동리 578-3	0.510	"
"	방축골천	이인면 목동리 산25	이인면 목동리 568-4	0.520	"
"	돌마루천	이인면 목동리 59	이인면 목동리 561-2	0.620	"
"	운천리천	이인면 신흥리 산13-2	이인면 신흥리 175-1	1.100	"
대학천	감골천	이인면 이곡리 산12	이인면 이곡리 336	0.670	"
석성천	용수천	이인면 북룡리 산15-1	이인면 북룡리 690-10	0.520	"
"	은골천	이인면 반송리 86	이인면 반송리 104-2	0.930	"
"	용담천	이인면 반송리 산4	이인면 반송리 437-2	0.50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석성천	선인동천	이인면 반송리 362	이인면 반송리 443-1	0.610	소하천 기준미달
"	내장골천	이인면 북룡리 산14	이인면 북룡리 185	0.500	"
"	뒷룡천	이인면 신영리 181	이인면 신영리 168-3	0.750	"
"	새터2천	이인면 신영리 산16-2	이인면 신영리 265-5	0.510	"
"	말라직이골천	이인면 신영리 356-12	이인면 신영리 358-4	0.600	"
왕촌천	만학골2천	계룡면 구왕리 453	계룡면 구왕리 494	0.600	소하천 기능상실
"	갑수골천	계룡면 구왕리 산68-2	계룡면 구왕리 643	0.580	"
"	홍룡골천	계룡면 구왕리 864	계룡면 구왕리 734	0.850	"
"	중고개천	계룡면 내흥리 767	계룡면 내흥리 654	0.850	"
"	통점천	계룡면 내흥리 325	계룡면 내흥리 554	1.050	"
"	고등골천	계룡면 내흥리 311	계룡면 내흥리 395	1.000	"
혈저천	원동천	계룡면 기산리 44-1	계룡면 기산리 584-2	0.950	"
"	범암골1천	계룡면 기산리 1049	계룡면 기산리 949-1	1.170	중대천으로 편입
"	큰덕골천	계룡면 기산리 1032	계룡면 기산리 928	1.120	소하천 기능상실
"	용수골천1	계룡면 기산리 산135	계룡면 기산리 873-1	0.960	"
"	고시향골천	계룡면 기산리 산129-1	계룡면 기산리 874-1	0.500	"
"	물탕골천	계룡면 기산리 15	계룡면 기산리 274-1	0.680	"
"	호령천	계룡면 화은리 741	계룡면 화은리 690	0.580	"
"	거사동천	계룡면 화은리 559	계룡면 화은리 321-9	0.560	"
노성천	윗소가티천	계룡면 유평리 758	계룡면 유평리 270-1	1.150	"
"	서주골천	계룡면 금대리 산13-1	계룡면 금대리 406-1	0.530	소하천 기준미달
"	복걸이천	계룡면 중장리 127	계룡면 중장리 905-46	0.600	소하천 기능상실
"	갑골천	계룡면 중장리 902	계룡면 계룡저수지	0.970	"
"	울곡천	계룡면 중장리 693	계룡면 중장리 942	0.500	소하천 기준미달
"	구간천	계룡면 하대리 산35	계룡면 하대리 861	0.600	소하천 기능상실
"	깃봉천	계룡면 월암리 산23-1	계룡면 월암리 212	0.500	"
"	통메천	계룡면 유평리 333-1	계룡면 유평리 3-7	0.730	"
"	큰골천	계룡면 향지리 79-2	계룡면 향지리 185	0.840	"
"	전진배천	계룡면 향지리 20	계룡면 향지리 149	0.750	"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노성천	윗대실천	계룡면 향지리 249-2	계룡면 향지리 321-2	0.620	소하천 기능상실
월산천	구탄말천	계룡면 죽곡리 산4-1	계룡면 죽곡리 100-1	0.500	"
노성천	뒷골천1	계룡면 월곡리 93-6	계룡면 월곡리 33-6	0.720	"
"	밀머리천	계룡면 월곡리 299-3	계룡면 월곡리 34-6	0.750	"
마암천	마티천	반포면 마암리 6	반포면 마암리 158	0.700	건축인허가 승인
용수천	밀목천	반포면 학봉리 산18	반포면 학봉리 788	0.980	소하천 기능상실
"	천장이천	반포면 학봉리 산7-10	반포면 학봉리 794-8	1.100	"
"	아래사기소천	반포면 온천리 264-5	반포면 온천리 433-199	1.070	"
"	용무골천	반포면 하신리 산1	반포면 하신리 379-30	0.550	"
"	밀목재천	반포면 학봉리 131	반포면 학봉리 191-2	1.100	"
"	통골천	반포면 학봉리 30-1	반포면 학봉리 17-5	0.500	"
사봉천	작은먹뱅이천	반포면 온천리 산43	반포면 온천리 388-8	0.530	"
용수천	구레돌천	반포면 하신리 377	반포면 하신리 350-1	0.700	"
"	체위천	반포면 하신리 125	반포면 하신리 31-3	1.050	"
"	참새골천	반포면 봉곡리 산67-1	반포면 봉곡리 317	0.720	"
"	공암천	반포면 공암리 535	반포면 공암리 513	0.690	"
계	202개소			160.911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3, 종로2-62)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366-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3호, 종로2-6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3. 15.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신관동 366-14번지 등 38필지

나. 사업내용(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사업 명 칭	사 업 내 용	비고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 종로2-62)사업	공주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 면적: 5,516㎡ - 대로3-3: B=25~30m, L=420m - 종로2-62: B=18~21m, L=343m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

-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 성 명 : (당초)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두석
(변경)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최윤성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합 계			5,516	5,516						
1	공주시 신관동	366-14	임야	210	210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	공주시 신관동	373-13	답	487	487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3	공주시 신관동	373-14	도로	7	7	1/1	공 주 시				
4	공주시 신관동	373-12	답	109	109	1/1	공 주 시				
5	공주시 신관동	374-45	대	253	253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6	공주시 신관동	374-46	대	29	29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7	공주시 신관동	374-47	임야	106	106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8	공주시 신관동	374-10	도로	26	26	1/1	국(국토교통부)				
9	공주시 신관동	374-48	도로	6	6	1/1	국(국토교통부)				
10	공주시 신관동	374-14	대	60	60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1	공주시 신관동	374-50	답	146	146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	공주시 신관동	374-51	전	119	119	1/1	국(국토교통부)				
13	공주시 신관동	374-52	전	86	86	1/1	국(국토교통부)				
14	공주시 신관동	374-53	전	27	27	1/1	국(국토교통부)				
15	공주시 신관동	374-54	대	61	61	1/1	국(국토교통부)				
16	공주시 신관동	374-55	도로	36	36	1/1	공 주 시				
17	공주시 신관동	374-56	도로	21	21	1/1	공 주 시				
18	공주시 신관동	374-58	대	151	151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9	공주시 신관동	374-60	도로	64	64	1/1	공 주 시				
20	공주시 신관동	374-42	전	72	72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1	공주시 신관동	374-43	전	49	49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2	공주시 신관동	375-14	대	448	448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3	공주시 신관동	375-15	대	428	428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4	공주시 신관동	375-17	도로	26	26	1/1	공 주 시				
25	공주시 신관동	375-18	도로	7	7	1/1	공 주 시				
26	공주시 신관동	375-19	전	89	89	1/1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7	공주시 신관동	377-10	도로	36	36	1/1	국(국토교통부)				
28	공주시 신관동	378-8	도로	37	37	1/1	이 주 연	서울 성동구 옥수동 100 옥수하이츠아파트 107-50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29	공주시 신관동	378-3	대	140	140	1/1	전 예 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78-3	근저당	공주 신용 협 동 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대동1길 69-1(반 죽동)
30	공주시 신관동	378-9	대	263	263	1/1	공주시 산립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31	공주시 신관동	382-17	도로	22	22	1/1	윤 건 길	군산시 장미동 1-62			
32	공주시 신관동	382-18	대	211	211	1/1	임 인 규	공주시 신관동 240-1	근저당 전세권	공주 농업 협 동 조합, 김영비	공주시 금성동 21-5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어리 149-17
33	공주시 신관동	540-65	도로	305	305	1/1	국(국토교통부)				
34	공주시 신관동	540-67	도로	379	379	1/1	국(국토교통부)				
35	공주시 신관동	571-14	도로	20	20	1/1	국(국토교통부)				
36	공주시 신관동	산32-40	임야	2	2	1/1	주한국토지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 란로 309			
37	공주시 신관동	산32-41	도로	560	560	1/1	국(국토교통부)				
38	공주시 신관동	산32-42	도로	418	418	1/1	국(국토교통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성 명	주 소	관계인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1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3	1층 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3.69	m ²	1/1	전예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78-3	근저당	공주신용협 동조합	충청남도 공 주시 대동1길 69-1(반죽동)
2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3	2층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6.28	m ²	1/1	전예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78-3	근저당	공주신용협 동조합	충청남도 공 주시 대동1길 69-1(반죽동)
3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3	창고	샌드위치판넬조	13.5	m ²	1/1	전예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78-3			
4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3	대문	철재	1	식	1/1	전예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78-3			
5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3	담장	조립식 (5단)	11	m	1/1	전예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78-3			
6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1층 점포	라멘조 스라브지붕	270.9	m ²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7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2층 사무실	라멘조 스라브지붕	270.9	m ²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8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담장	벽돌조	23.7	m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9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수도시설	계량기포함	1	식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10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향나무		2	주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11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조경석		1	식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12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1층 소매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70.97	m ²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근저당 전세권	공주농업 협동조합 김영비	공주시 금성 동 21-5 충남 부여군 구아리 149-17
13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2층 다가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70.97	m ²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근저당 전세권	공주농업 협동조합 김영비	공주시 금성 동 21-5 충남 부여군 구아리 149-17
14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3층 다가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48.56	m ²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근저당 전세권	공주농업 협동조합 김영비	공주시 금성 동 21-5 충남 부여군 구아리 149-17
15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창고1 (3층소재)	사이딩판넬조	16.8	m ²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16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창고2 (3층소재)	샌드위치판넬조	9.9	m ²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17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창고3	샌드위치판넬조	6	m ²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18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주목		1	주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19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소나무		2	주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20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향나무		1	주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21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석등		2	개	1/1	임인규	공주시 신관동 240-1			
22	신규	공주시 신관동	378-6	휴업보상	신림조합	1	식	1/1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시 신관동 378-6			
23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휴업보상	기아자동차	1	식	1/1	김영비	공주시 신관동 382-8 1층			
24	신규	공주시 신관동	382-8	휴업보상	크린토피아	1	식	1/1		공주시 신관동 382-8 1층			

